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 문서이력

개정일	버전	내역	비고
2016.05	1.0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최초제정 (laaS용)
2017.07	1.1	 기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인증사업자 보안관리 활동 추가 부처명 변경(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분개정
2018.06	2.0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확대시행(laaS→laaS·SaaS)에 따른 SaaS 보안인증 기준 추가 및 수정	개정 (IaaS·SaaS 통합용)
2019.03	2.1	• 행안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반영 • SaaS 구축 절차 및 안내사항 등 추가	부분개정
2019.07	3.0	• SaaS 보안인증 등급제(표준, 간편) 시행 • 보안인증 유효기간(3년→5년) 수정 등	개정
2019.09	3.1	• 클라우드서비스 유형 및 평가대상 수정 등	부분개정
2019.11	3.2	• 클라우드서비스 인증 평가 절차 상세 안내 등	부분개정
2020.11	4.0	DaaS 보안인증제 시행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유형 및 평가대상 수정 등	개정
2021.08	4.1	•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SECaaS 도입요건 변경) 개선사항 반영	부분개정
2022.10	4.2	• 멀티클라우드 인증평가 개선 등	부분개정
2023.01	5.0	• 클라우드 컴퓨팅법·시행령·고시 개정 내용 반영	개정
2023.03	5.1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등급제) 개정 내용 반영	부분개정
2024.06	5.2	• 멀티클라우드 인증평가, 취약점진단 등 개선사항 반영	부분개정
2025.02	5.3	• 사후평가 등 개선사항 반영	부분개정

T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
	 1. 보안인증제도 개요······	6
	2. 보안인증체계	10
	3. 기대효과	11
П	보안인증 대상 및 범위	
	1. 보안인증 대상	14
	2. 보안인증 범위	17
	3. 보안인증기준(기존 인증제도)	18
	4. 보안인증기준(등급제)	20
ПТ	보안인증 절차	
	 1. 보안인증 절차	24
	2. 사후관리 절차	34
	부록	
	 A. 재해복구(DR)센터 구축 기준	40
	B. 보안인증 관련 각종 양식	41
	C. 보안인증기준	4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 1. 보안인증제도 개요
- 2. 보안인증체계
- 3. 기대효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1, 보안인증제도 개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공공기관에게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클라우드서비스 공급
-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 추진 근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의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 (15.11.10, 국무회의)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시행

- (보안인증)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마련(국가정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15년)
 - * 공공기관 보안지침(국가정보원),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평가(KISA) 등 보안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실시(*16년~)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에 따라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중략〉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 2. 인증평가 결과의 심의
- 3. 보안인증서의 발급·관리
- 4.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 5. 보안인증평가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6. 그 밖에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 보안인증 유형·등급 및 종류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의 인증 유형은 laaS, SaaS(표준등급, 간편등급), DaaS이며, 인증 등급은 상·중· 하로 구분됩니다. 또한, 평가 종류는 최초평가, 사후평가, 갱신평가가 있습니다.
 - ※ 기존 인증제도는 상·중등급 변경 시행전까지 인증 신청가능



• 인증 유형 및 등급

- (인증 유형) IaaS, SaaS, DaaS 인증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운영

구 분	laaS	SaaS		DaaS	
T 世	laas	표준등급	간편등급	Daas	
인증항목	116개	79개	31개	110개	
유효기간	5년				

- (인증 등급) 상·중·하 등급 인증 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운영

구분	하등급	하등급 SaaS	중등급 상등급	
인증항목	647#	30711	추후 안내 예정	
유효기간 5년				

● 평가 종류

- 최초평가는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에 실시하는 평가
 - ※ 최초평가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 **사후평가**는 보안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며, 인증 유효기간(5년) 안에 매년 시행
- **갱신평가**는 보안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 ※ 갱신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

🏠 추진경과

-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대책」수립·발표(15.9.9. 경제관계장관회의)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 시행(15.9.28)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수립·발표('15.11.10, 국무회의)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 고시」 제정·시행('16.4.4)
 - ※ 제7조(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에 따라 시험·평가 및 인증을 위한 근거 마련
- laaS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시행('16.6.1)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확대(laaS → laaS·SaaS) 시행('18.8.1)
- SaaS 보안인증 등급제(표준등급, 간편등급) 시행('19.7.24)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평가대상 확대(laaS·SaaS → PaaS) 시행('19.9.2)
 - ※ PaaS 분야에 대해서는 SaaS 표준등급으로 평가·인증을 수행함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확대(DaaS) 시행('20.11.26)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3.1.1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₁ 개정('23.1.1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23.1.31)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등급제)」 개정('23.1.31)

2 , 보안인증체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체계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 정책기관, 인증/평가기관, 인증위원회, 기술자문기관, 인증신청인으로 구분합니다.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 공공부문 기술자문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직 및 역할



구분	주관기관	주요역할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안인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 인증/평가기관의 지정 및 감독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 신청접수 보안인증기준, 지침 개발 인증서 발급 인증된 클라우드서비스 관리 기타 인증업무 수행
평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기관	보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팀 구성보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 수행
인증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결과를 통한 인증 심의·의결 ・인증취소의 타당성 심의 ・학계, 연구기관, 기술자문기관 등 클라우드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기술 자문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국가·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보안기준 마련 • 국가·공공 클라우드 안전성 강화 대책 수립
인증신청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 laaS, SaaS, DaaS 등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자체 보안활동 정기・수시 수행

3 기대효과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민간 사업자) 관점

-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을 통해 **이용자 신뢰도 향상** 및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 디지털전문계약제도를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가·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 체결 가능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에 등록 필요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국가·공공기관) 관점

• 인증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클라우드 도입의 걸림돌인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및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서 목록 확인

•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 클라우드보안인증제 - 인증서 발급현황

♪ 인증의 홍보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표시 사용** 가능
 - ※ 보안인증을 표시할 경우, 인증대상, 인증번호,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인증대상] ○○○서비스(OaaS) [유효기간] 2023.00.00~2028.00.00



[인증번호] CSAP-0000-000호 [인증대상] ○○○서비스(OaaS) [유효기간] 2023.00.00~2028.00.00



[인증번호] CSAP-0000-000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의미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클라우드서비스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님
- 보안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공공기관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



보안인증 대상 및 범위

- 1. 보안인증 대상
- 2. 보안인증 범위
- 3. 보안인증 기준(기존 인증제도)
- 4. 보안인증 기준(등급제)









보안인증 대상 및 범위









1, 보안인증 대상

♦ 보안인증 대상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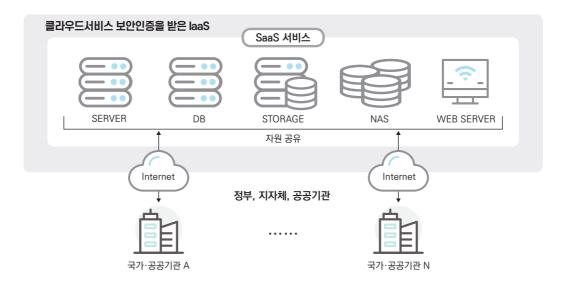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불필요 유형 예시

보안인증 불필요 서비스 유형(예)

- 단일 기관만을 위해 구축되는 Private Cloud 환경의 laaS/SaaS/DaaS
- 단순 설치형 SW 형태의 SaaS 등
- ※ 보안인증이 불필요한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이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며,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공공기관과 협의 후 사업 수행 가능

♪ SaaS 보안인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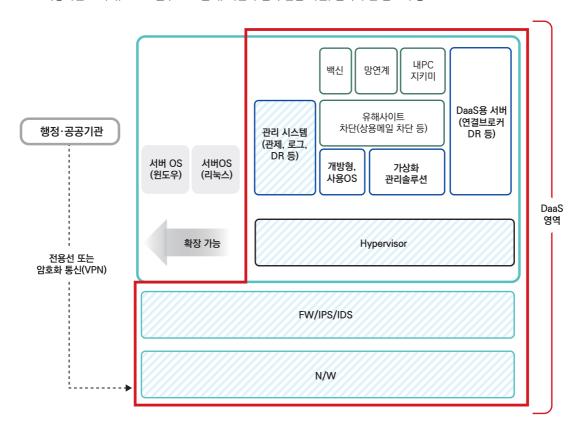
SaaS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을 받은 laaS 서비스 환경에서 구축되어야하며,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퍼블릭(Public)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필요



- 보안서비스(SECaaS)의 경우, 사전 인증 필수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도입 요건을 만족한 보안기능으로 서비스를 구축 필요
 - ※ 사전 인증 필수 제품 유형은 「국정원 홈페이지-보안적합성 검증-개요 및 체계」참조

♪ DaaS 보안인증 대상

- DaaS 서비스는 인프라(네트워크, 보안장비, 하이퍼바이저 등) 영역에 구성되어야 하며, DaaS의 필수 보안요건* 만족 필요
 - * 가상자원 초기화, DaaS 필수 SW 설치, 비인가 접속 단말 차단, 접속 구간 암호화 등



2 ૣ 보안인증 범위

♪ 보안인증 범위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범위는 클라우드서비스에 포함되거나 관련 있는 자산(시스템, 설비, 시설등), 조직, 지원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

클라우드서비스 자산분류(예)

구분	설 명
서버	•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서버(Windows, Linux) 등
네트워크	• 라우터, 스위치, 허브 등
정보보호시스템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가상사설망 제품 등
소프트웨어	•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SW 등
응용프로그램	• 관리, 모니터링, 빌링, 분석 프로그램 등
데이터베이스	• MS-SQL, MySQL, 오라클 등
홈페이지	• 서비스 정보 안내, 신청 및 관리 등을 위한 홈페이지 등
단말기	• PC, 노트북, 모바일 디바이스 등
매체	· USB, 외장형 메모리, 디스크, 테이프 등
문서	• 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 매뉴얼 등
설비	• 출입보안, 전기·공조·소방 설비, 부대설비 등
가상자원 운영 S/W	•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플랫폼 등
가상자원	• 가상서버, 가상PC, 가상 스토리지, 가상 네트워크, 배포이미지 등
지원서비스	• Auto Scaling, Load Balancer, DNS, 모니터링, 로그 분석 등

3 , 보안인증기준 (기존 인증제도)

- laaS 인증은 관리적·기술적 및 국가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4개분야 116개 통제항목으로 구성
- SaaS 표준등급 인증은 관리적·기술적 및 국가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3개 분야 79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
 - ※ SaaS 표준등급은 laaS 위에 구축되어 laaS 보다 통제항목이 약 31% 줄었으며, 서비스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예비점검" 단계에서 인증 범위 및 항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SaaS 간편등급 인증은 관리적·기술적 및 국가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1개 분야 31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
 - ※ SaaS 간편등급은 laaS 위에 구축되어 laaS 보다 통제항목이 약 73% 줄었으며, 서비스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예비점검" 단계에서 인증 범위 및 항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DaaS 인증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및 국가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4개 분야 110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

클라우드서비스(기존) 보안인증기준 항목 수

			통제형	제항목 수	
통제 분야	통제 항목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1 저너너충 저채 미 조지	1.1. 정보보호 정책	3	3	1	3
1.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1.2. 정보보호 조직	2	2	1	2
	2.1. 내부인력 보안	5	4	1	4
2. 인적보안	2.2. 외부인력 보안	3	0	0	3
	2.3. 정보보호 교육	3	1	1	1
	3.1. 자산 식별 및 분류	3	1	0	3
3. 자산관리	3.2. 자산 변경관리	3	1	0	3
	3.3. 위험관리	4	1	0	4
	4.1. 공급망 관리정책	2	2	0	2
4. 서비스 공급망 관리	4.2. 공급망 변경관리	2	1	0	2

			통제형	남목 수	
통제 분야	통제 항목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3	3	1	3
5. 침해사고관리	5.2. 침해사고 대응	2	2	1	2
	5.3. 사후관리	2	2	0	2
	6.1. 장애대응	4	4	1	4
6. 서비스 연속성 관리	6.2. 서비스 가용성	3	2	1	3
7 7714	7.1. 법 및 정책 준수	2	1	1	2
7. 준거성	7.2. 보안 감사	2	2	0	2
0. 571711101	8.1. 물리적 보호구역	5	0	0	5
8. 물리적 보안	8.2.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6	0	0	6
0.7111711101	9.1. 가상화 인프라	6	2	1	5
9. 가상화 보안	9.2. 가상 환경	4	4	0	2
	10.1. 접근통제 정책	2	2	1	2
10. 접근통제	10.2. 접근권한 관리	3	3	0	3
	10.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4	4	3	4
11. 네트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6	5	2	6
	12.1. 데이터 보호	6	6	2	6
12.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12.2. 매체 보안	2	0	0	2
	12.3. 암호화	2	2	2	2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5	5	1	5
40 111 []	13.2. 구현 및 시험	4	4	1	4
13.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13.3. 외주 개발 보안	1	1	0	1
	13.4. 시스템 도입 보안	2	0	0	2
	14.1. 관리적 보호조치	4	4	4	4
14. 국가기관등의 보안요구사항	14.2. 물리적 보호조치	2	2	2	2
	14.3. 기술적 보호조치	4	3	3	4
	총계	116	79	31	110

4 , 보안인증기준 (등급제)

- 하등급 인증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및 국가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4개 분야 64개 통제항목 으로 구성
- 하등급 SaaS 인증은 관리적·기술적 및 국가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로 총 11개 분야 30개 통제항목 으로 구성
- ※ 서비스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예비점검" 단계에서 인증 범위 및 항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클라우드서비스(등급제) 보안인증기준 항목 수

통제 분야	통제 항목	통제항목 수		
승세 군아	중세 영국	하등급	하등급 SaaS	
1.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1.1. 정보보호 정책	1	0	
1. OTTY 0'4 & T4	1.2. 정보보호 조직	1	1	
	2.1. 내부인력 보안	1	1	
2. 인적보안	2.2. 외부인력 보안	0	0	
	2.3. 정보보호 교육	1	1	
	3.1. 자산 식별 및 분류	2	0	
3. 자산관리	3.2. 자산 변경관리	0	0	
	3.3. 위험관리	1	0	
4 11114 22062121	4.1. 공급망 관리정책	1	0	
4. 서비스 공급망 관리	4.2. 공급망 변경관리	1	0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3	1	
5. 침해사고관리	5.2. 침해사고 대응	2	1	
	5.3. 사후관리	1	0	
0 11111 014 11 7171	6.1. 장애대응	4	1	
6. 서비스 연속성 관리	6.2. 서비스 가용성	1	1	
7 774	7.1. 법 및 정책 준수	1	1	
7. 준거성	7.2. 보안 감사	1	0	

트레 비아	트겐 하다	통제항목 수		
통제 분야	통제 항목	하등급	하등급 SaaS	
8. 물리적 보안	8.1. 물리적 보호구역	2	0	
o. 눌니색 보인	8.2.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0	0	
이 기사회 HON	9.1. 가상화 인프라	5	1	
9. 가상화 보안	9.2. 가상 환경	1	0	
	10.1. 접근통제 정책	2	1	
10. 접근통제	10.2. 접근권한 관리	3	0	
	10.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4	3	
11. 네트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5	2	
	12.1. 데이터 보호	2	1	
12.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12.2. 매체 보안	0	0	
	12.3. 암호화	1	1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3	1	
13.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13.2. 구현 및 시험	3	1	
13. 시스템 개발 및 포탑 모한	13.3. 외주 개발 보안	0	0	
	13.4. 시스템 도입 보안	0	0	
	14.1. 관리적 보호조치	4	4	
14. 국가기관등의 보안요구사항	14.2. 물리적 보호조치	2	2	
	14.3. 기술적 보호조치	5	5	
	총계	64	30	







보안인증 절차

- 1. 보안인증 절차
- 2. 사후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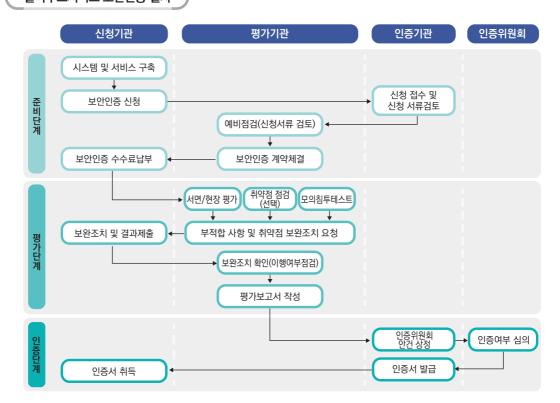


1 , 보안인증 절차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보안인증 신청접수 완료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평균 2.5~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사업자의 보완조치 기간 30일 포함(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절차



• 상기 절차는 최초평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산범위·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보안인증 단계별 소요일수 예시

기존 인증제	 laaS, DaaS(총10일): 본점검 5일 → 이행점검 5일 SaaS 표준등급(총9일): 본점검 5일 → 이행점검 4일 SaaS 간편등급(총7일): 본점검 4일 → 이행점검 3일
등급제	 하등급(총9일): 본점검 5일 → 이행점검 4일 하등급 SaaS(총7일): 본점검 4일 → 이행점검 3일

[※] 본점검 및 이행점검은 서면/현장평가, 모의침투테스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취약점 점검은 신청기업이 점검 방식을 선택(①평가기관 직접 점검, ② 신청기업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증적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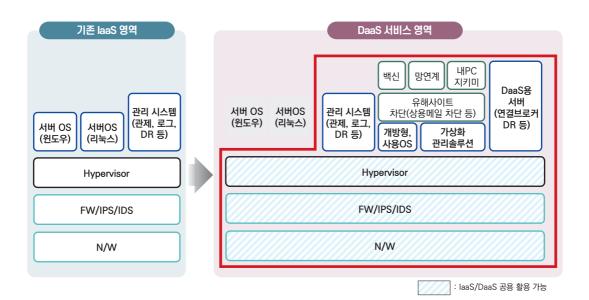
[※] 보안인증 단계별 소요일수는 클라우드서비스 자산 규모·서비스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1 준비단계



1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 인증신청인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laaS, SaaS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 IaaS인 경우에는 주센터, 재해복구(DR)센터, 이용자·관리자 포털, 가상자원 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제공과 관련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 SaaS인 경우에는 보안인증을 받은 IaaS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환경 위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 ※ 하등급 laaS의 경우 재해복구(DR)센터 제공유무는 사업자 자율
 - DaaS인 경우에는 인프라 영역(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하이퍼바이저 등)에 DaaS의 필수 요소 (가상PC OS, 가상화관리 솔루션, 관리서버, 필수 보안SW 등)를 추가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1) 안전한 가상PC 운영을 위한 필수 보안SW를 가상PC OS VM에 구성하여 배포

DaaS 필수 보안SW

- 백신, 망연계 솔루션,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상용메일 차단기능 포함), 내PC 지키미
- 2) 가상PC 내에 자료저장 방지를 위해, 가상머신 클린 이미지 제공, 가상머신 내 홈 폴더 초기화 등의 저장방지 기술 적용 필요

2 보안인증 신청 및 접수

• 보안인증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류 자가점검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최초/갱신, 사후 중 선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자산관리대장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택 제출서류(해당 시)

수수료 지원 희망 시 ※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일부 생략 신청 시 (수수료 할인 신청)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 인증평가 일부 생략 명세서 ※ 그 외 인증평가 일부 생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취약점 자체점검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명세서
사후 서면평가 시	사후 서면평가 요약 명세서 사후 서면평가 증적자료

- ※ 신청서 및 기타 양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클라우드보안인증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증신청인은 보안인증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서류 내용이 미비하여 인증/평가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재구비 또는 보완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인증 신청 및 접수문의

• 이메일 : cloud@kisa.or.kr

③ 신청서류 검토

-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인증평가에 필요한 자료 구비 유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형태를 확인하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제출서류 확인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운영명세서 작성현황 확인
 - 국가기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취약점 점검 및 모의침투테스트를 위한 점검 대상 확인
 - 취약점 자체점검 제출서류 확인 (해당 시)
 - 사전 인증 필수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요건 확인

4 예비점검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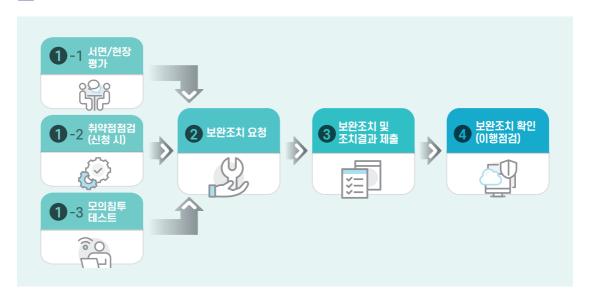
- 보안인증의 범위, 등급 산정, 준비사항, 수수료 등을 확정하기 위해 예비점검을 수행
- ※ 예비점검 단계에서 평가준비가 미흡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 또는 인증평가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음

5 보안인증 계약 및 수수료 납부

- 예비점검이 수행된 이후 인증범위, 인증평가 기간, 인증 수수료 등을 최종 협의하고 보안인증 계약 체결
- 보안인증 계약에 따라 확정된 수수료를 인증평가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함



2 평가단계



1 -1 서면/현장평가

- 서면/현장평가는 클라우드서비스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 ※ 인증신청인이 서비스 시연을 진행하거나 평가팀에게 테스트용 계정을 부여하여 확인 가능
- 서면평가는 정보보호 정책, 지침, 매뉴얼(절차) 등 내부규정 존재 여부 및 해당 내부 규정이 보안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 평가하며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증적자료 확인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는 서면평가의 결과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인터뷰, 관련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 수행
 - ※ 현장평가의 경우 서면평가 진행현황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
- 평가팀은 서면/현장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신청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부적합 보고서의 적절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인증신청인은 평가팀이 작성한 부적합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검토

1 -2 취약점 점검

• 평가팀은 보안인증 범위에 포함된 자산에 대해 점검도구(툴), 수동점검, 인터뷰 등을 통해 취약점 점검 수행

취약점 점검 구분

- CCE(Common Configuration Enumeration) : 취약한 설정에 대한 점검
 - 비밀번호 길이/복잡성, 기본 계정 삭제 등 시스템 구성 및 설정에 관한 규정(또는 정책)을 준수하는지 점검
-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 OS, Application 고유의 취약점
 - 벤더가 제공하는 패치와 관련된 취약점으로써, Mitre에서 CVE코드(예를 들면, CVE-2023-0000) 부여 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시큐어코딩): laaS/DaaS 웹 포털, SaaS 웹 포털 및 기능(App) 등 ※ SaaS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점검 범위 조정 가능
- ※ 취약점 점검 가이드는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클라우드보안인증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취약점 점검 방식의 경우, 신청기업에서 자체점검 또는 인증·평가기관 직접점검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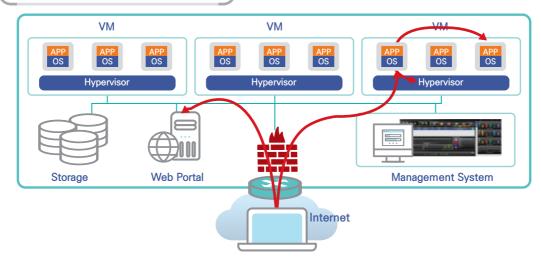
취약점 점검	수행 방법
CCE	(선택) 자체점검 또는 평가기관 점검
CVE	(선택) 자체점검 또는 평가기관 점검
소스코드 진단	(선택) 자체점검 또는 평가기관 점검
모의침투	인증·평가기관 직접 점검

- ※ 인증·평가기관 직접점검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비용(수수료) 발생
- ※ 취약점 점검 수행 절차 및 양식은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취약점 점검 수행방법은 평가기관에 요청하여 평가팀에서 수행하거나, 신청기업이 자체점검 수행한
 증적제출을 선택할 수 있음

1 -3 모의침투테스트

- 평가팀은 인증신청인과 클라우드서비스 모델, 구축 유형 등을 고려하여 모의침투 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후 모의침투테스트 수행
 - IaaS, DaaS는 포털, 가상환경(VM) 등 외부 경로를 통한 침투테스트 수행
 - ① 외부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서비스 포털로의 침투
 - ② 이용자 VM을 통한 하이퍼바이저 또는 다른 VM으로의 침투
 - SaaS는 서면평가 등을 통해 수립한 침투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침투테스트 수행

클라우드서비스 외부 침투테스트 경로(예시)



2 보완조치 요청

- 평가팀은 종료회의를 통해 인증신청인에게 서면/현장평가, 취약점 점검 및 모의침투테스트 결과를 설명하고, 보완조치요청서를 통해 부적합 사항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
 - ※ 향후 진행 사항 및 일정에 대한 사항 안내

③ 보완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 인증신청인은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조치 내역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
- ※ 필요시 공문을 통해 최대 60일 이내로 추가 연장 가능

4 보완조치 확인(이행점검)

• 평가팀장은 보완조치 내역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보완조치 여부를 판단

구분	세부조치
보완조치 완료 시	보완조치 완료 확인서에 서명 및 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보완조치 미흡 시	미흡한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인증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사항(보류·가결·부결) 통보

평가 시 유의사항

• 평가 중 인증준비 미흡, 요청사항 대응 미흡, 중요 부적합 사항 미조치 등 평가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평가 중단 및 평가팀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인증 단계



1 인증위원회 개최

-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인증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기술자문기관 등 클라우드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최초평가 또는 갱신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안인증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은 각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을 취합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심의·의결 결과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 심의·의결 원칙

- 부적합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된 경우에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단, 해당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관점에서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인증신청인은 해당사항을 보완 완료 후 평가기관에게 수정된 "보완조치 내역서"를 제출

• 보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평가기관은 해당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차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인증 여부를 의결

2 인증서 발급 및 취득

-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인증신청인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발급
- 인증신청인은 인증서를 수령한 이후 보안인증 표시 가능

4 멀티클라우드 기반 SaaS

- 인증 받은 SaaS서비스를 동일 구성·환경으로 다른 laaS에 구축하는 경우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점검 수행
- 인증신청인은 추가된 서비스 구성·환경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멀티클라우드 신청 양식을 제출하고, 서면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범위 포함 가능
 - ※ 멀티클라우드 신청 양식은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동일 구성·환경의 멀티클라우드로 운영되는 SaaS서비스이므로, 하나의 인증서 내에서 인증범위가 추가된 것으로 관리 됨

5 보안인증 수수료

- 보안인증 계약체결 시 서비스 유형, 자산 등을 협의하여 수수료를 산정
- 보안인증 수수료는 인증신청인이 평가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사전준비, 계약, 현장심사, 보완조치결과 확인, 이행점검, 인증위원회 상정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의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수수료 일부 감면 가능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범위에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신청한 범위가 일치하거나 포함되어야 함
 -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 등 제출 필요
- 보안인증 수수료 산정기준

보안인증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 보안인증 수수료 산정 내역은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 - 클라우드보안인증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 사후관리 절차



1 사후평가 및 갱신평가

1 사후평가

- 사후평가는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이며, 보안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매년 1회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서면/현장평가의 경우,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이행증적을 중심으로 점검
 - 취약점 점검의 경우, 인증·평가기관에서 점검 수행 또는 신청기업에서 자체점검 수행 가능
 - ※ 신청기업은 자체점검으로 취약점 점검 수행 항목을 개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취약점 점검 유형은 인증·평가기관에서 점검 수행

취약점 점검	수행 방법
CCE	(선택) 자체점검 또는 인증·평가기관 점검
CVE	(선택) 자체점검 또는 인증·평가기관 점검
소스코드 진단	(선택) 자체점검 또는 인증·평가기관 점검
모의침투	인증·평가기관 직접 점검

[※] 자체점검으로 선택한 취약점 점검 수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 SaaS의 경우, 1차, 3차, 4차 사후평가 수행 시 "사후 서면평가" 또는 "기존 사후평가"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
 - ※ 신청기업이 희망하여 1차, 3차, 4차 사후평가를 '기존 사후평가'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인증평가 방식(인증유형, 자체점검 등)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함

[※] 모의침투테스트는 최초평가와 동일하게 수행

- 사후 서면평가는 기업의 신청서류와 보안인증기준별 이행증적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제출받아 평가
 - ※ 서비스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해 신청기업의 업무현장에 방문하여 자료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음
- 사후 서면평가 시 신청기업은 취약점 점검을 자체 수행하여 해당 결과를 증적으로 제출
- 사후 서면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멀티클라우드·양수도·침해사고 및 장애발생 등 사유 발생 시 차년도 샘플링 점검 대상으로 분류
- ※ 샘플링 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평가기관에서 서면/현장평가, 취약점 진단, 모의침투테스트를 진행(일정은 신청기업과 협의)

사후평가 단계별 소요일수

기존	 laaS, DaaS(총10일): 본점검 5일 → 이행점검 5일 SaaS 표준등급(총9일): 본점검 5일 → 이행점검 4일 SaaS 간편등급(총7일): 본점검 4일 → 이행점검 3일
등급제	 하등급(총9일): 본점검 5일 → 이행점검 4일 하등급 SaaS(총7일): 본점검 4일 → 이행점검 3일

- ※ 본점검 및 이행점검은 서면/현장평가, 모의침투테스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취약점 점검은 신청기업이 점검 방식을 선택(①평가기관 직접 점검, ② 신청기업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증적을 제출)
- ※ 보안인증 단계별 소요일수는 클라우드서비스 자산 규모·서비스·평가방식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인증사업자의 신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통해 자산, 계약관계 확인 등의 서면/ 현장평가 및 해당 서비스를 포함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
 - 보안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인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사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인증위원회에 취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

2 갱신평가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평가는 보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의미
- 갱신평가는 유효기간(인증발급일 기준)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내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 효력 상실
- 갱신평가를 통해 연장되는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초평가와 동일하게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부록

- A. 재해복구(DR)센터 구축 기준
- B. 보안인증 관련 각종 양식
- C. 보안인증기준









부록 A 재해복구(DR)센터 구축 기준

1. 필수(요구) 조건

- 단순 데이터의 원격지 백업센터가 아닌, 자체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재해복구(DR)센터
 ⇒ 공공 클라우드 전용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상면 등을 구비
- 재해복구센터 내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네트워크는 제외)와 접근통제는 필요

2. 자율사항

• 상기 필수조건 외에 나머지 조건사항은 인증신청인의 자율 기준에 따름

자율 기준 허용 사항

- 주센터, DR센터 간 지리적 거리(이격 거리)
- DR서비스 복구시간(실시간 내지는 수시간 소요)
- DR센터 내 이중화 구성 여부

3. 참고사항

• 재해복구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재해·재난 대응력은 높아지나, 관리가 어렵고 통신비용이 증가하므로, 인증신청인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선정 필요

4. 국가·공공기관 유의사항

- 국가·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의 재해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DR 서비스 계약(이용)이 필요
- ※ 국가·공공기관이 DR 서비스를 계약(이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재해복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부록 B 보안인증 관련 각종 양식

1.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양식

보안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류 자가점검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최초/갱신, 사후 중 선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자산관리대장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운영 명세서
-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택 제출서류(해당 시)

수수료지원희망시 ※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일부 생략 신청 시 (수수료 할인 신청)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서 인증평가 일부 생략 명세서 ※ 그 외 인증평가 일부 생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취약점 자체점검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 취약점 자체점검 명세서
사후 서면평가 시	사후 서면평가 요약 명세서 사후 서면평가 증적자료

부록 C 보안인증기준

1. laaS, SaaS, DaaS 보안인증 기준

★ ISMS 인증시 점검대체 가능 항목

관리적 보호조치

7	7 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1. 정보보	호 정책 및 조직					
1.1. 정보 보호 정책	1.1.1.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정책을 문서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 후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0	0		0
0 1	1.1.2. 정보보호 정책 검토 및 변경	정보보호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관련 법규 변경 및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0	0		0
	1.1.3. 정보보호 정책문서 관리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0	0		0
1.2. 정보 보호	1.2.1. 조직 구성	정보보호 활동을 계획, 실행, 검토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0	0	0	0
조직	1.2.2. 역할 및 책임 부여	정보자산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도 서비스 수준 협약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0	0	0	0
2. 인적보	안					
2.1. 내부 인력 보안	2.1.1. 고용계약★	고용 계약서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조건을 포함시키고, 새로 채용하거나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이 허용되기 이전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0	0		0
	2.1.2.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지정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0	0	0	0

=	P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간편)	DaaS
	2.1.3. 직무 분리★	권한 오남용 등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0	0		0
	2.1.4.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밀유지 서약서에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0	0		0
	2.1.5. 퇴직 및 직무변경	임직원의 퇴직 또는 직무 변경에 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의 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접근권한도 제거하여야 한다.	0			
2.2. 외부 인력	2.2.1. 외부인력 계약★	외부인력(외부유지보수직원, 외부용역자 포함)에 의한 정보자산 접근 등과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0			0
보안	2.2.2. 외부인력 보안 이행 관리★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위반사항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0	-		0
	2.2.3. 계약 만료 시 보안★	외부인력과의 계약 만료 시 자산 반납, 접근권한의 회수,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대한 비밀유지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0	-		0
2.3. 정보 보호 교육	2.3.1. 교육 프로그램 수립★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포함하여 연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0	-		-
	2.3.2. 교육 시행★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	0	0	0
	2.3.3. 평가 및 개선★	정보보호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0	-		
3. 자산관	반리					
3.1. 자산 식별 및 분류	3.1.1. 자산 식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자산(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 등)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식별된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	0		0
	3.1.2. 자산별 책임할당★	식별된 자산마다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0			0
	3.1.3. 보안등급 및 취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보안 등급별 취급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0			0

	Ŧ	1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3.2. 자산 변경 관리	3.2.1. 변경관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 영향 평가를 통해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한다.	0	0		0
		3.2.2. 변경 탐지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등)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을 탐지하고 최신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0	-		0
		3.2.3. 변경 후 작업검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등)의 변경 후에는 보안성 및 호환성 등에 대한 작업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0	-		0
	3.3. 위험 관리	3.3.1. 위험관리계획 수립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법적 분야 등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관리 방법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0	-		0
		3.3.2.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예: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0	0		0
		3.3.3.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	-		0
		3.3.4. 위험처리	법규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과 위험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0	-		0
	4. 서비스	공급망 관리	'				
	4.1. 공급망 관리 정책	4.1.1.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과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4.1.2. 공급망 계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고 다자간 협약 시 책임을 개별 계약서에 각각 명시해야하며,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0	0		0
-	4.2. 공급망 변경 관리	4.2.1. 공급망 변경관리	정보보호 정책,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공급망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후 계약서 내용 변경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0	0		0
		4.2.2. 공급망 모니터링 및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기록 및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여야 한다.	0	-	·	0

=	·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5. 침해사	고관리					
5.1. 침해사 고 대응 절차 및 체계	5.1.1.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 절차, 유출 금지 대상,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책임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0	0	0	0
	5.1.2.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0	0		0
	5.1.3. 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점검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0	0		0
5.2. 침해 사고 대응	5.2.1. 침해사고 보고★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0	0	0	0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0	0	·	0
5.3. 사후 관리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유사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0	0		0
	5.3.2. 재발방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침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변경하여야 한다.	0	0		0
6. 서비스	연속성관리					
6.1. 장애 대응	6.1.1. 장애 대응절차 수립★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0	0		0
	6.1.2. 장애 보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0	0	0	0
	6.1.3. 장애 처리 및 복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시켜야 한다.	0	0		0

ī	¹ 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6.1.4. 재발방지★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 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0	0		0
6.2. 서비스 가용성	6.2.1. 성능 및 용량 관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 및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0
	6.2.2. 이중화 및 백업	정보처리설비(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케이블, 접속 회선 등)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설비를 이중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하도록 백업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0	0		0
	6.2.3. 서비스 가용성 점검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	-		0
7. 준거성						
7.1. 법 및 정책	7.1.1. 법적요구사항 준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0	0	0	0
준수	7.1.2. 정보보호 정책 준수	정보보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0	-		0
7.2. 보안 감사	7.2.1. 독립적 보안감사	법적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 정책 준수 여부를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	0		0
	7.2.2. 감사기록 및 모니터링	보안감사 증적(로그)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 및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비인가된 접근 및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0	0		0



☆ 물리적 보호조치

Ŧ	'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간편)	DaaS
8. 물리적	보안				
8.1. 물리적 보호 구역	8.1.1. 물리적 보호 구역 지정★	중요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구역 (예: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 구역, 사무실, 외부인 접견실 등)을 지정하고, 각 보안 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0		0
	8.1.2. 물리적 출입 통제★	물리적 보안 구역에 인가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예 : 경비원,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0		0
	8.1.3. 물리적 보호 구역 내 작업 ★	유지보수 등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0		0
	8.1.4. 사무실 및 설 비 공간 보호	사무실 및 설비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0		0
	8.1.5. 모바일 기기 반출·입★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 미승인 반출입을 통한 중요정보 유출, 내부망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임직원 및 외부인력 모바일 기기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0		0
시설 및	8.2.1. 정보처리시설 의 배치★	물리적 및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인가 된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설 내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0		0
장비보호	8.2.2. 보호설비★	각 보안 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누수, 전력 이상 등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하여 화재 감지기, 소화 설비, 누수 감지기,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UPS), 이중 전원선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0		0
	8.2.3. 케이블 보호 ★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케이블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케이블은 손상이나 도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0		0
	8.2.4.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정보처리시설은 가용성과 무결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0		0
	8.2.5. 장비 반출·입 ★	장비의 미승인 반출·입을 통한 중요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 구역 내 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장비 반출·입 절차를 수립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0		0
	8.2.6. 장비 폐기 및 재사용★	정보처리시설 내의 저장 매체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를 파악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복구 불가능 상태에서 재사용하여야 한다.	0		0

🛕 기술적 보호조치

Ŧ	1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간편)	DaaS
9. 가상화	보안					
9.1. 가상화 인프라	9.1.1. 가상자원 관리	가상자원(가상 머신, 가상 스토리지, 가상 소프트웨어 등)의 생성, 변경, 회수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9.1.2. 가상자원 회수	이용자와의 계약 종료 시 가상자원 회수 절차에 따라 백업을 포함 한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0			0
	9.1.3. 가상자원 모니터링	가상자원에 대한 무결성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가상자원의 변경(수정, 이동, 삭제, 복사)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또 한, 가상자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0			0
	9.1.4. 하이퍼바이저 보안	가상자원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0		-	0
	9.1.5. 공개서버 보안★	가상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와 가상소프트웨어(앱, 응용 프로그램)를 배포하기 위한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0
	9.1.6.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표준화된 가상화 포멧, 이식성이 높은 가상화 플랫폼, 공개 API 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을 높여야 한다.	0			
9.2. 가상 환경	9.2.1.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환경(가상PC, 가상 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코드 탐지, 차단 등의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견 시 이용자 통지하고 사용 중지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0	0		0
	9.2.2. 인터페이스 및 API 보안	가상 환경(가상PC, 가상 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9.2.3. 데이터 이전	이용자가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상 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전하도록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0	0	-	
	9.2.4. 가상 소프트웨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가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0	0		0
10. 접근통	통제					
10.1. 접근 통제	10.1.1. 접근통제 정책 수립★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영역 및 범위, 접근통제 규칙,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정책	10.1.2. 접근기록 관리	접근기록 대상을 정의하고 서비스 통제, 관리,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유지하여야 한다.	0	0	0	0

Ŧ	7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간편)	DaaS
10.2. 접근 권한 관리	10.2.1.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수립하고 업무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0	0		0
	10.2.2. 관리자 및 특수 권한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하여야 한다.	0	0	·	0
	10.2.3. 접근권한 검토★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이용(장기간 미사용), 변경(퇴직 및 휴직, 직무 변경, 부서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	0		0
10.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10.3.1. 사용자 식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0	·	0
	10.3.2. 사용자 인증★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 하여야 한다.	0	0	0	0
	10.3.3. 강화된 인증 수단 제공★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다중 요소 인증 등 강화된 인증 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0	0
	10.3.4. 패스워드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패스워드 복잡도 기준, 초기 패스워드 변경, 변경 주기 등 사용자 및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패스워드 관리 책임이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관리자 패스워드는 별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절차는 공지하여야 한다.	0	0	0	0
11. 네트웨	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11.1.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보안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11.1.2.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	DDoS, 비인가 접속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중요 정보 유출등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0	0		0
	11.1.3. 네트워크 정보 보호시스템 운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IDS, VPN 등)을 운영하여야한다.	0	0		0
	11.1.4. 네트워크 암호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중요정보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암호 화된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0	0	0	0

ā	7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간편)	DaaS
	11.1.5. 네트워크 분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의 네트워크 접근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0	0	0	0
	11.1.6. 무선 접근통제★	클라우드 시스템은 무선망과 분리하고, 무선접속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무선접속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0
12. 데이티	터보호 및 암호화					
12.1. 데이터	12.1.1. 데이터 분류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0	0		0
보호	12.1.2. 데이터 소유권	이용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0	0		0
	12.1.3. 데이터 무결성	입·출력, 전송 또는 데이터 교환 및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해 항상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0	0		0
	12.1.4. 데이터 보호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0	0	0	0
	12.1.5. 데이터 추적성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정보(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	0	0		0
	12.1.6. 데이터 폐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종료,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0	0
12.2. 매체 보안	12.2.1. 저장매체 관리★	중요정보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등의 저장매체 폐기 및 재사용 절차를 수립하고 매체에 기록된 중요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0			0
	12.2.2. 이동매체 관리★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외장하드, USB, CD 등 이동매체 취급,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12.3. 암호화	12.3.1. 암호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에는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등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0	0	0	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2.3.2.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관한 안전한 절차를 수립하고,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0	0	0	0

ā	구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간편)	DaaS
13. 시스팀	템 개발 및 도입 !	보안	,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3.1.1. 보안요구 사항 정의★	신규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정보보호 기본요소(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0	0		0
	13.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의 입·출력 및 송수신 과정에서 무결성, 기밀성이 요구될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0	0	0	0
	13.1.3. 보안로그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의 인증, 권한 변경, 중요정보 이용 및 유출 등에 대한 감사증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	0		0
	13.1.4. 접근권한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업무의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	0		0
	13.1.5. 시각 동기화★	로그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자료로서 효력을 지니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시각을 공식 표준시각으로 정확하게 동기화 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시각 정보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한다.	0	0		0
13.2. 구현 및 시험	13.2.1. 구현 및 시험★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 하고,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도출한 보안요구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0	0	0	0
	13.2.2. 개발과 운영환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단 분리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0
	13.2.3.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데이터 생성,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0	0		0
	13.2.4. 소스 프로그램 보안★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또한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	0		0
13.3. 외주 개발 보안	13.3.1. 외주 개발 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구현 및 이관까지의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0	0		0
13.4. 시스템 도입	13.4.1. 시스템 도입 계획★	클라우드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용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		·	0
보안	13.4.2. 시스템 인수★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인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인수 전에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0			0

☆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조치

ā	1 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표준)		Daas
14. 국가	기관등의 보안 요	구 사항				
14.1. 관리적 보호 조치	14.1.1.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	국가기관등의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정보를 국가기관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0	0	0	0
	14.1.2.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보안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0	0	0	0
	14.1.3. 보안관리 수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장소 및 망은 국가기관등의 내부 정보 시스템 운영 보안 수준에 준하여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0	0	0	0
	14.1.4. 사고 및 장애 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및 재발방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0	0	0	0
14.2. 물리적 보호 조치	14.2.1 물리적 위치 및 영역분리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 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0	0	0	0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 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4.2.2.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0	0	0	0
14.3. 기술적 보호 조치	14.3.1.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제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중요자료를 암호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0	0	0	0

7	분	세부조치사항	laaS	SaaS (표준)	SaaS (간편)	DaaS
	14.3.2. 보안관제 제반환경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는 민간 영역을 제외한 공공 영역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0			0
	14.3.3 데이터 유출 방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공공의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및 로그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4.3.4. 시스템 격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보안관제가 이뤄지는 서비스 네트워크 이외의 비정상 통신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체계 마련 등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0	0
	14.3.5. 영역분리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는 영역분리를 통해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 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역 분리를 훼손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완화/제거 하고, 비인가 접근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0	0	0	0



2. 하등급 보안인증기준

★ ISMS 인증시 점검대체 가능 항목

관리적 보호조치

7	¹ 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1. 정보보호	^호 정책 및 조직			
1.1. 정보보호 정책	1.1.1.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정책을 문서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 후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0	·
	1.1.2. 정보보호 정책 검토 및 변경	정보보호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관련 법규 변경 및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1.1.3. 정보보호 정책 문서 관리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정보보호 조직	1.2.1. 조직 구성	정보보호 활동을 계획, 실행, 검토하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0	0
교식	1.2.2. 역할 및 책임 부여	정보자산과 보안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도 서비스 수준 협약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2. 인적보인	<u>가</u>			
2.1. 내부 인력 보안	2.1.1. 고용계약★	고용 계약서에 정보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조건을 포함시키고, 새로 채용하거나 합류한 근무 인력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설비, 자원, 자산에 접근이 허용되기 이전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2.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 지정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0	0
	2.1.3. 직무 분리★	권한 오남용 등 내부 임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1.4.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비밀유지서약서에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2.1.5. 퇴직 및 직무 변경	임직원의 퇴직 또는 직무 변경에 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수행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접근권한도 제거하여야 한다.		
2.2. 외부 인력 보안	2.2.1. 외부인력 계약★	외부인력(외부유지보수직원, 외부용역자 포함)에 의한 정보자산 접근 등과 관련된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Ŧ	'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2.2.2. 외부인력 보안 이행 관리★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2.3. 계약 만료 시 보안★	외부인력과의 계약 만료 시 자산 반납, 접근권한의 회수,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대한 비밀 유지서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 정보 보호	2.3.1. 교육 프로그램 수립★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포함하여 연간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	2.3.2. 교육 시행★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내·외부 보안사고 발생,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	0
	2.3.3. 평가 및 개선 ★	정보보호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3. 자산관	리			
3.1. 자산 식별 및	3.1.1. 자산 식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자산(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 등)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식별된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	
분류	3.1.2. 자산별 책임 할당★	식별된 자산마다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0	
	3.1.3. 보안등급 및 취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산의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보안 등급별 취급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2. 자산 변경	3.2.1. 변경관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 영향 평가를 통해 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한다.		
관리	3.2.2. 변경 탐지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을 탐지하고 최신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2.3. 변경 후 작업검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후에는 보안성 및 호환성 등에 대한 작업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위험관리	3.3.1. 위험관리 계획 수립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법적 분야 등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관리 방법과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3.3.2.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예 :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0	·

ā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3.3.3.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정보보호 전 영역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4. 위험처리	법규 및 계약관련 요구사항과 위험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서비스	공급망 관리			
4.1. 공급망 관리 정책	4.1.1.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과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4.1.2. 공급망 계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고 다자간 협약 시 책임을 개별 계약서에 각각 명시해야하며,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4.2. 공급망 변경 관리	4.2.1. 공급망 변경 관리	정보보호 정책,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공급망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후 계약서 내용 변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4.2.2. 공급망 모니 터링 및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기록 및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여야 한다.	0	
5. 침해사.	고관리			
5.1. 침해사 고 대응 절차 및	5.1.1.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절차, 유출 금지 대상,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책임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0	0
체계	5.1.2.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0	
	5.1.3. 침해사고 대응 훈련 및 점검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0	·
5.2. 침해 사고 대응	5.2.1. 침해사고 보고★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0	0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0	

	7	·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	5.3. 사후 관리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유사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		
		5.3.2. 재발방지★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침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변경하여야 한다.	0	
6.	. 서비스인	변속성관리			
7	6.1. 장애 대응	6.1.1. 장애 대응절차 수립★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0	
		6.1.2. 장애 보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 원인,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0	0
		6.1.3. 장애 처리 및 복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시켜야 한다.	0	
		6.1.4. 재발방지★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 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	0	
,	6.2. 서비스 가용성	6.2.1. 성능 및 용량 관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 및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0	0
		6.2.2. 이중화 및 백업	정보처리설비(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케이블, 접속 회선 등)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설비를 이중화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하도록 백업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6.2.3. 서비스 가용성 점검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	. 준거성				
5	7.1. 컵 및 정책	7.1.1. 법적요구사항 준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0	0
	준수	7.1.2. 정보보호 정책 준수	정보보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u> </u>	7.2. 코안 감사	7.2.1. 독립적 보안감 사	법적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 정책 준수 여부를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2. 감사기록 및 모니터링	보안감사 증적(로그)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 및 모니터링 되어야되고 비인가된 접근 및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0	

♪ 물리적 보호조치

=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8. 물리적	보안			
8.1. 물리적 보호 구역	8.1.1. 물리적 보호 구역 지정★	중요 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구역(예 :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 구역, 사무실, 외부인 접견실 등)을 지정하고, 각 보안 구역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0	
	8.1.2. 물리적 출입 통제★	물리적 보안 구역에 인가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예 : 경비원,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0	
	8.1.3. 물리적 보호 구역 내 작업★	유지보수 등 주요 정보처리 설비 및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1.4. 사무실 및 설 비 공간 보호	사무실 및 설비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8.1.5. 모바일 기기 반출·입★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 미승인 반출입을 통한 중요정보 유출, 내부망 악성코드 감염 등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임직원 및 외부인력 모바일 기기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2. 정보 처리 시설 및	8.2.1. 정보처리 시설의 배치★	물리적 및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인가 된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설 내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장비 보호	8.2.2. 보호설비★	각 보안 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누수, 전력 이상 등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하여 화재 감지기, 소화 설비, 누수 감지기,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UPS), 이중 전원선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2.3. 케이블 보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케이블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케이블은 손상이나 도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2.4.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정보처리시설은 가용성과 무결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8.2.5. 장비 반출·입★	장비의 미승인 반출·입을 통한 중요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 구역 내 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장비 반출·입절차를 수립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8.2.6. 장비 폐기 및 재사용★	정보처리시설 내의 저장 매체를 포함하여 모든 장비를 파악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복구 불가능 상태에서 재사용하여야 한다.		

🐧 기술적 보호조치

=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9. 가상화	·보안			
9.1. 가상화 인프라	9.1.1. 가상자원 관리	가상자원(가상 머신, 가상 스토리지, 가상 소프트웨어 등)의 생성, 변경, 회수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0	
	9.1.2. 가상자원 회수	이용자와의 계약 종료 시 가상자원 회수 절차에 따라 백업을 포함한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0	
	9.1.3. 가상자원 모니터링	가상자원에 대한 무결성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가상자원의 변경(수정, 이동, 삭제, 복사)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0	
	9.1.4. 하이퍼바이저 보안	가상자원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0	
	9.1.5. 공개서버 보안★	가상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와 가상소프트웨어(앱, 응용프로그램)를 배포하기 위한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9.1.6.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표준화된 가상화 포멧, 이식성이 높은 가상화 플랫폼, 공개 API 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을 높여야 한다.		
9.2. 가상 환경	9.2.1.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환경 (가상PC, 가상 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코드 탐지, 차단 등의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이용자 통지하고 사용 중지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0	
	9.2.2. 인터페이스 및 API 보안	가상 환경(가상PC, 가상 서버, 가상 소프트웨어 등)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2.3. 데이터 이전	이용자가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상 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전하도록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9.2.4. 가상 소프트웨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가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10. 접근	통제			
10.1. 접근통 제 정책	10.1.1. 접근통제 정책 수립★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영역 및 범위, 접근통제 규칙,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10.1.2. 접근기록 관리	접근기록 대상을 정의하고 서비스 통제, 관리,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유지하여야 한다.	0	0

ā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10.2. 접근 권한	10.2.1.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수립하고 업무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0	
관리	10.2.2. 관리자 및 특수 권한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하여야 한다.	0	-
	10.2.3. 접근권한 검토★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이용(장기간 미사용), 변경(퇴직 및 휴직, 직무변경, 부서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	
10.3. 사용자 식별 및	10.3.1. 사용자 식별★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	
인증	10.3.2. 사용자 인증★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여야 한다.	0	0
	10.3.3. 강화된 인증 수단 제공★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다중 요소 인증 등 강화된 인증 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10.3.4. 패스워드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패스워드 복잡도 기준, 초기 패스워드 변경, 변경 주기 등 사용자 및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패스워드 관리 책임이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관리자 패스워드는 별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절차는 공지하여야 한다.	0	0
11. 네트위	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11.1.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보안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0	
	11.1.2.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	DDOS, 비인가 접속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중요 정보 유출 등을 막기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0	
	11.1.3.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IDS, VPN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0	
	11.1.4. 네트워크 암호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중요정보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암호화된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0	0
	11.1.5. 네트워크 분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의 네트워크 접근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0	0
	11.1.6. 무선 접근 통제★	클라우드 시스템은 무선망과 분리하고, 무선접속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한다. 무선접속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12. 데이터	터 보호 및 암호호	H			
12.1. 데이터 보호	12.1.1. 데이터 분류	데이터 유형,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u> </u>	12.1.2. 데이터 소유권	이용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0		
	12.1.3. 데이터 무결성	입·출력, 전송 또는 데이터 교환 및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해 항상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2.1.4. 데이터 보호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위·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1.5. 데이터 추적성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정보(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			
	12.1.6. 데이터 폐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종료,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0	
12.2. 매체 보안	12.2.1. 저장매체 관리★	중요정보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등의 저장매체 폐기 및 재사용 절차를 수립하고 매체에 기록된 중요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12.2.2. 이동매체 관리★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외장하드, USB, CD 등 이동매체 취급,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3. 암호화	12.3.1. 암호 정책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에는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등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복잡도), 키관리,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하만 적용	() ※하민 적용	
	12.3.2.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관한 안전한 절차를 수립하고,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3.1.1. 보안요구 사항 정의★	신규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정보보호 기본요소(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0		
	13.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의 입·출력 및 송수신 과정에서 무결성, 기밀성이 요구될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0	0	

=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13.1.3. 보안로그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의 인증, 권한 변경, 중요정보 이용 및 유출 등에 대한 감사증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1.4. 접근권한 기능★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업무의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1.5. 시각 동기화★	로그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자료로서 효력을 지니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시각을 공식 표준시각으로 정확하게 동기화 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시각 정보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한다.	0	-
13.2. 구현 및 시험	13.2.1. 구현 및 시험★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 하고,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도출한 보안요구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0	0
	13.2.2. 개발과 운영환 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단 분리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	
	13.2.3.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데이터 생성,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2.4. 소스 프로그램 보안★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	
13.3. 외주 개발 보안	13.3.1. 외주 개발 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 구현 및 이관까지의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3.4. 시스템 도입	13.4.1. 시스템 도입 계획★	클라우드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용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	13.4.2. 시스템 인수★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인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인수 전에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한다.		-

❖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호조치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14.	국가기관등의 보안 요	구 사항		
14. 관리 보호 조차	의적 보안서비스 호 수준 협약	국가기관등의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정보를 국가기관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0	0
	14.1.2.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보안기능을 가진 정보통신 제품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56조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0	0
	14.1.3. 보안관리 수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장소 및 망은 국가기관등의 내부 정보 시스템 운영 보안 수준에 준하여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0	0
	14.1.4. 사고 및 장애 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및 재발방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0	0
14. 물리 보호 조차	리적 물리적 위치 호 및 영역분리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및 데이터와 이를 위한 관리·운영 인력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물리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하만 적용	○ ※하만 적용
	14.2.2.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0	0
14. 기술 보호 조차	술적 검증필 호 암호화 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중요자료를 암호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검증필 국가표준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0	0

구분		세부조치사항	하등급	하등급 SaaS
	14.3.2. 보안관제 제반환경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는 민간 영역을 제외한 공공 영역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관제 수행 및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0	0
	14.3.3 데이터 유출 방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공공의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저장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및 로그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만 적용	○ ※하만 적용
	14.3.4. 시스템 격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보안관제가 이뤄지는 서비스 네트워크 이외의 비정상 통신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는 체계 마련 등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	0
	14.3.5. 영역분리	국가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는 영역분리를 통해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기관등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 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역 분리를 훼손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완화/제거 하고, 비인가 접근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0	0



부록 D 인증평가 일부 생략의 범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표7)

분야		항목
2. 인적보안	2.1. 내부인력 보안	2.1.1. 고용계약
		2.1.3. 직무 분리
		2.1.4. 비밀유지서약서
	2.2. 외부인력 보안	2.2.1. 외부인력 계약
		2.2.2. 외부인력 보안 이행 관리
		2.2.3. 계약 만료 시 보안
	2.3. 정보보호 교육	2.3.1. 교육 프로그램 수립
		2.3.2. 교육 시행
		2.3.3. 평가 및 개선
3. 자산관리	3.1. 자산 식별 및 분류	3.1.1. 자산 식별
		3.1.2. 자산별 책임할당
		3.1.3. 보안등급 및 취급
5. 침해사고관리	5.1.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	5.1.1.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5.1.2.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5.2. 침해사고 대응	5.2.1. 침해사고 보고
		5.2.2. 침해사고 처리 및 복구
	5.3. 사후관리	5.3.1. 침해사고 분석 및 공유
		5.3.2. 재발방지
6. 서비스연속성관리	6.1. 장애대응	6.1.1. 장애 대응절차 수립
		6.1.2. 장애 보고
		6.1.3. 장애 처리 및 복구
		6.1.4. 재발방지
	6.2. 서비스 가용성	6.2.1. 성능 및 용량 관리
8. 물리적 보안	8.1. 물리적 보호구역	8.1.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8.1.2. 물리적 출입통제
		8.1.3. 물리적 보호구역 내 작업
		8.1.5. 모바일 기기 반출·입

분야		항목
8. 물리적 보안	8.2.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	8.2.1. 정보처리시설의 배치
		8.2.2. 보호설비
		8.2.3. 케이블 보호
		8.2.4.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8.2.5. 장비 반출・입
		8.2.6. 장비 폐기 및 재사용
9. 가상화 보안	9.1. 가상화 인프라	9.1.5. 공개서버 보안
10. 접근통제	10.1. 접근통제 정책	10.1.1. 접근통제 정책 수립
	10.2. 접근 권한 관리	10.2.2. 관리자 및 특수 권한관리
		10.2.3. 접근권한 검토
	10.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10.3.1. 사용자 식별
		10.3.2. 사용자 인증
		10.3.3. 강화된 인증 수단 제공
		10.3.4. 패스워드 관리
11. 네트워크 보안	11.1. 네트워크 보안	11.1.1. 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
		11.1.2.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
		11.1.3.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1.1.5. 네트워크 분리
		11.1.6. 무선 접근통제
12. 데이터 보호 및	12.2. 매체 보안	12.2.1. 저장매체 관리
암호화		12.2.2. 이동매체 관리
	12.3. 암호화	12.3.1. 암호 정책 수립
		12.3.2. 암호키 관리
13.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13.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3.1.1. 보안요구사항정의
		13.1.2. 인증 및 암호화 기능
		13.1.3. 보안로그 기능
		13.1.4. 접근권한 기능
		13.1.5. 시각 동기화
	13.2. 구현 및 시험	13.2.1. 구현 및 시험
		13.2.3. 시험 데이터 보안
		13.2.4. 소스 프로그램 보안
	13.3. 외주 개발 보안	13.3.1. 외주 개발 보안
	13.4. 시스템 도입 보안	13.4.1. 시스템 도입 계획
		13.4.2. 시스템 인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발 행 2025년 2월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쇄처 호정씨엔피(02-2277-4718)

〈비매품〉

본 안내서의 내용은 무단 배포, 게재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경우,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라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안내서**











